
2025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모집요강 및 사업안내]

2025. 2.

목 차

I. 모집공고문	03
II. 자주 묻는 질문(FAQ)	09

모집공고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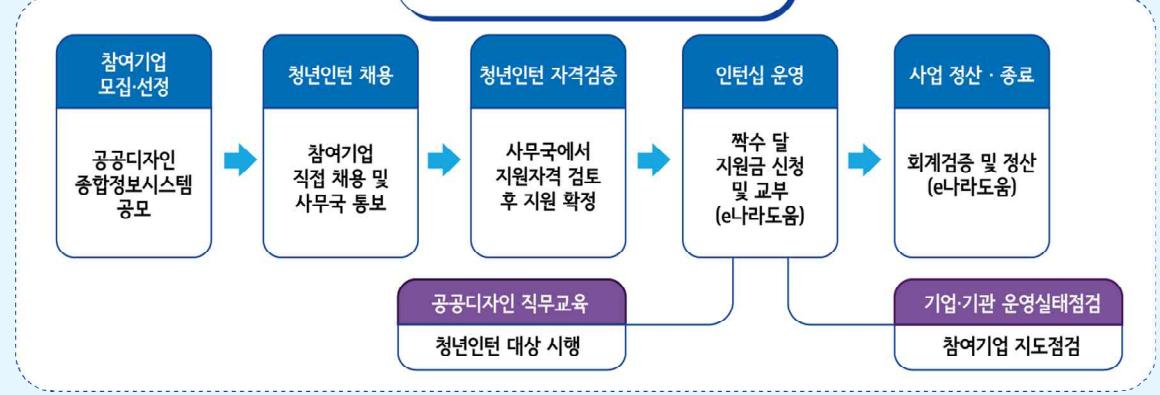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을 통해 신진디자이너들의 공공디자인 전문역량 강화 지원
- (사업내용) ① 신규 청년디자이너 모집·채용
② 월 인건비 지원 및 청년인턴 대상 공공디자인 직무교육 제공·이수
- (지원대상) * 자세한 사항은 세부요건 확인
 - (참여기업·기관)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업·기관
 - (참여인턴) 참여기업·기관에 공공디자인 분야로 신규 채용된 자 중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지원규모) 청년인턴 105명 내외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기업 당 최대 3명까지 채용 가능
- (지원내용)

구분		일반 참여기업·기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인턴십 기간			채용일로부터 3개월~6개월
지원 내용	참여기업·기관	임금지원	▶ 월 139만원 지원 ▶ 최대 3명까지 채용 가능 (최대 2,500만원)
	참여인턴		공공디자인 직무교육 및 교재 제공

- (사업방식) 민간경상보조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흐름도



「2025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 참여기업·기관 모집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 공공디자인 전문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5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 명: 2025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 모집 대상: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기업·기관**
* 비영리민간단체 제외
- 신청자격 **※ 모두 충족해야함**

내용	비고
① 공공디자인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② 나라장터 또는 발주처 발급 실적증명서만 인정③ 공고일 기준 <u>3년 이내</u> 실적만 인정 (계약일 기준 2022.02.05. 이후)
② 청년디자이너 인턴 채용 예정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채용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공공디자인 분야 청년 인턴 채용② 해당 사업장에 1년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③ 협약일 이전 채용된 인턴 제외 (4대보험 가입일 기준)

③ 자세한 필수 충족사항 **⑤ 유의사항** 참조

- 인턴 채용 공고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하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없는 기업
-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이 없는 기업

- 모집기간 : 2025년 2월 6일(목)부터 ~ 2025년 3월 5일(수) 18:00까지

※ 단, 지원금 소진 시 모집 초기 종료될 수 있음

- 시행기간 : 모집일로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선정기업·기관 청년 인턴십 인건비 보조

① 청년인턴 1인당 **월 139만원*** 임금 지원

- * '인건비 209만원 + 사회보험 기업부담금 23만원'의 60%인 월 139만 원
- ※ 청년인턴의 임금 중 최소 40%는 선정기업·기관이 부담하며, 임금 지원은 임금의 최대 60% 한도로 최대 월 139만 원까지 지원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인건비 125만원만 지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국민연금) 최대 90% 지원

② 청년인턴 대상 공공디자인 직무교육 및 교재 제공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3인 인턴 채용 가능

※ 청년인턴 직접 채용 후 사무국 통지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지급 불가할 수 있음

○ 지원기간: 인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 6개월 이내 지원

○ 지원조건

- ①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 상태인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청년인턴 채용

※ 청년인턴 채용일 기준 나이 적용

* **공공디자인 관련업무?**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제2018-05호) 제2조에 따른 도시 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 직무(그 외 관련 분야 기획 및 연구, 디자인, 설계 분야 포함)

* **취업 중으로 보는 자**

①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②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③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종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② 인턴채용 근로자에게 월 급여 2,096,270원 이상 지급 및 4대 보험가입

※ 2025년도 최저임금 기준, 기본급 2,096,270원 이상 지급 (식대, 시간외근무, 제수당 등 불포함)

- ③ 청년인턴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필수 이수

- ④ 청년인턴 대상 공공디자인 직무교육 필수 이수

- ⑤ 운영실태점검(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참여

3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https://publicdesign.kr/>) 온라인 접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① 공공디자인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발주처 및 실적 인정 범위 [붙임]자료 확인	나라장터 또는 발주처 발급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할기관 발급
	③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④ 국세 완납증명서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⑦ 지원사업 참여 동의 및 협약서	신청 [서식 1] 8p 참고
선택	⑧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관할기관 발급

4

신청 및 지원 절차

○ 사업 운영 절차



*지원 자격 여부 검토 시 서류 보완 및 심의에 따라 별도의 검토 시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음(해당 시 개별안내)

**인턴십 협약 이후 청년인턴 직접 채용 후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지급 불가할 수 있음

○ 세부 일정

구분	일정/내용
1 참여기업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02.06.(목) ~ 2025.03.05.(수) 18:00까지 ·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2 선정기업 협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03.12.(수)까지 · 구비서류 적격심사 및 선정기업 협약체결(서류보완 마감기한 7일)
3 청년인턴 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업 협약체결 이후 청년인턴 직접 채용 · 지원금 소진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청년인턴 채용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인턴 관련 구비서류 사무국 제출 및 적격 검토 · 인턴 채용 자격 미달 시 반려 · 사무국을 통한 채용 확정 통보 후 지원금 확정
5 인턴십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턴십 시행기간) ~2025.10.31.까지 - (공공디자인 온라인 직무교육 학습) ~ 2025.10.31.까지 - (운영실태점검 및 만족도조사) 2025.07.~2025.10. 예정

○ 지원금 교부 및 e나라도움 시스템 안내

* 본 사업은 [투명한 국고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금을 교부 및 정산](#)하고 있습니다.

구분	일정/내용
지원금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업 청년인턴 임금 선지급하며 서류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짹수 달 첫째 주 신청(4, 6, 8, 10, 11월)
e 나 라 도 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03.31.까지(예정) · 체납여부, 부정수급이력 등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소명 또는 선정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인턴 채용 확정 후 개별 안내(지원 확정 사항 시스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신청(짜수 달) 및 e나라도움 지원금 교부 · 인턴 출근부, 급여지급내역, 4대보험가입이력 등 서류 적정 검토 · 교부 후 '집행등록'을 통해 가상계좌 → 실물 계좌 이체 절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별 정산 시기 상이 ~ 2025.12.까지 · 지원금 지급 종료 후 e나라도움 회계 검증 시행 및 수수료 지원* * 지원 기간 내 정산 비협조 시, 회계 수수료 자부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03.(예정) · 해당 기업 별도 안내(회계연도 내 국고보조금 1천만원 이상 수령 시 정보공시 대상)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요건에 맞지 않거나, 후발적으로 지원 요건을 상실한 경우 지원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함
- 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협약 해지, 인턴 퇴사 등이 예정될 경우 사유 발생 10일 이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으로 서술)”에 통보하여야 함
- 공진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채용 인턴 대상 성희롱·폭력 방지 등 근로자 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선정기관·기업은 공진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관련 직무교육, 설문조사, 사업평가, 운영실태점검, 정산 등 협조해야 함
- 운영실태점검(모니터링) 등에서 인턴십 업무환경 부적격 또는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경도에 따라 소명·시정지시, 지원금 환수,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턴 근로 이후라도 취소/환수할 수 있음

❖ 참여기관·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비영리민간단체
-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 기업
- 공고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발생 명단으로 공표된 기업
- 인턴채용 공고일 이전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채용 예정 인턴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 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인턴 간의 계약(근로계약 포함)이 별도 존재하는 경우
- 본 사업의 인턴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타 재정지원 일자리 및 임금 지원사업 참여 중인 기업

* 예외 사항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 해당 지원사업 중복참여 시, 인건비 209만원의 60% 월125만원 지원(4대보험 기업부담금 23만원 제외)

❖ 청년인턴

- 채용 예정인 참여기업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임원)와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취업상태가 아닌 자
- 채용 예정 인턴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 1년 이내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 채용기업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자
-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원받는 자* 상기 예외사항(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동일 적용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지원 제외 직무: 생산, 회계, 경리, 경영 등)

○ 2025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 운영사무국

- (전화문의) 02-398-7962/5, 디자인융합본부 공공디자인기반팀
- (메일문의) public@kcdf.kr

■ [서식 1]

지원사업 참여 동의 및 협약서

<input type="checkbox"/> 지원금 지급조건			
1	귀 기업은 2019년~2024년도 중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지원금 수혜 기준, 참여연도 모두 체크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2019	<input type="checkbox"/>	
	2020	<input type="checkbox"/>	
	2021	<input type="checkbox"/>	
	2022	<input type="checkbox"/>	
	2023	<input type="checkbox"/>	
	2024	<input type="checkbox"/>	
2	사업장에서 청년 인턴에게 <u>급여</u> <u>先지급</u> 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급여이체내역, 출근부, 4대보험 가입내역 등 제출 ※중도입·퇴사, 별도 임금계산일 지정에 따른 일할 계산은 진흥원에서 규정하는 계산에 따름	<input type="checkbox"/> 동의	
3	선정기업·기관의 채용현황(청년인턴 채용 및 통보)에 따라 <u>지원금 예산이 사전</u> <u>소진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u> 이에 대하여 정부와 공진원에 책임을 묻지 못하고 협약서 내 지원 불가 조항에 따를 것입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e나라도움 이용 동의			
4	본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u>국고보조금통합정보시스템</u> (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금이 교부되며, 참여기업은 해당 시스템을 사용(등록·신청·집행·정산)하셔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5	지원금 지급 및 정산을 위한 필수사항 · <u>신규 통장 개설 또는 0원 통장 사용</u> · 정산 완료 시까지 '2025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 용도로만 사용 · 정산 시 예탁계좌(e나라도움 가상계좌) 발생이자 반납 · e나라도움 정보공시 등록 ※보조금 1천만원 이상 수급 시 해당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중복지원 참여 확인			
6	본 지원사업 지원기간 동안 해당 인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임금지원사업 <u>중복참여 불가합니다.</u> ※ 예외사항: 사업장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동의	
7	채용 예정인 청년인턴(신규)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u>두루누리 중복 지원관련 필독사항</u>] · (1)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며 (2)근로자의 월 평균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회계·세무 담당자(혹은 대행사)를 통해 확인 필요 · 추후 중복참여 확인 시, 지급된 4대보험 기업부담금(월 14만원) 환수 조치	<input type="checkbox"/> 있다 월 125만원 지원	<input type="checkbox"/> 없다 월 139만원 지원

상기 내용과 같이 참여 동의서에 항목에 "동의" 및 확인하며 지원사업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에 협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기관·기업명 : _____ 대표자명 : _____ (인)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귀하

자주 묻는 질문(FAQ)

Part 2

*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자주 묻는 질문
모집공모 관련	Q1. '공공디자인' 이 무엇인가요?
	Q2. 실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Q3. 공공디자인 실적 발주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Q4. 공공디자인 사업 분야 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인턴 채용 및 근로계약서 체결	Q1. 제공된 양식이 아닌, 자체 양식으로 근로계약 체결할 수 있나요?
	Q2. 필독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Q3. 인턴은 수습근로자인데,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Q4. 실수령액 증가를 위해 비과세를 기본급에서 감액지급해도 되나요?
지원금 산출 방식	Q1~2. 임금계산기간에 따른 지원금 일할 계산 방법이 어려워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Q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Q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취소하고 싶어요.
	Q3. 인턴십이 끝난 뒤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Q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수 교육인가요?
	Q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인턴 중도퇴사	Q1. 인턴의 중도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절차가 있을까요?

2025년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 FAQ

1. 모집공모 관련(자격)

Q.01

‘공공디자인’이 무엇인가요?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Q.02

실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 **나라장터 또는 발주처 발급**(발주처 직인날인)하여 공공디자인종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하도급(하청) 발주인 경우 원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 원도급처 승인만 있는 경우 불인정함

Q.03

공공디자인 실적 발주처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처 인정범위를 안내합니다.

구분	인정범위	
국가	15부 2처(기획재정부, 국방부, … 국가보훈처)	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 행정구역	바로가기
지방공기업*	지방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 공시대상 *지방출자·출연기관 포함	바로가기
공공기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공시대상	바로가기

- 위 관련 산하기관 인정 가능합니다.

(ex. ① 국방부-대한민국 육군 육군사관학교 / ②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00중학교 (단, 사립 제외))

Q.04

공공디자인 분야 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공공디자인 분야 선택 시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하세요. (출처: 2023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구분	세부 내용
공공디자인 정책/통계	디자인 대상에 대하여 추진하는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조사하고 타당성을 따져보는 일 *법규 및 제도/정책 및 행정/연구 및 통계 등
공공공간	일반 국민을 위한 물리적/심리적 영역이나 범위 *가로공간/광장/공원/휴양공간 등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사용되는 표지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
정보디자인	정보 전달을 위한 디자인 *노선도/정보체계 등
공공시설	일반 국민을 위해 용도를 고려하여 만들어지는 공간, 설비, 장비 및 도구 *공공청사/문화복지시설/교통시설/환경시설 등
공공용품	일반 국민을 위해 목적을 고려하여 만들어지는 물건 *가구/안전장비/기념품 등
서비스	국민과 국가기관 등이 접촉하는 여러 경로와 요소 등을 관리하는 행위 *편집디자인/전시회/홍보물/UI.UX 등
조형물(일반)	의미나 가치,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형상이나 형태로 디자인하는 행위 *일반조형물 포함, 상징조형물 제외
융복합	서로 다른 분야를 복합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드는 디자인 행위 *농촌 융복합, 융복합디자인, 감성디자인 등

1. 근로계약서 작성

Q.01

제공된 양식이 아닌, 자체 양식으로 근로계약 체결할 수 있나요?

- ▶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기간, 업무의 내용, 임금계산일, 4대보험가입] 등 필수 확인사항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Q.02

[필독] 「청년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근로계약기간] 본 사업은 최소 3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근로계약 체결 가능하며, 인턴십 시행기간은 10월 31일 까지입니다.
- 6개월 채용 가능 기준일: 5월 1일까지 (이후 인턴 6개월 미만 채용 가능)
 - 3개월 채용 가능 기준일: 8월 1일까지 (이후 인턴 채용 불가)
- ▶ [업무의내용]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부여 필수
- ▶ [근무일/휴일] 통상적으로 근무일은 '월-금'요일 / 주휴일은 '주말 중 하루(토/일)'를 정합니다.
- ▶ [임금계산기간] *'임금계산기간'에 따른 임금 계산 방법
- ◆ 1~말 일 계산 방법 : 중도입사자에게 일할계산하여 급여지급
 - (예시) 3월 7일 중도 입사 시: 3월 7일 ~ 3월 31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입사일 ~ 입사일 전날 계산 방법 : 중도입사자에게 만근 급여 지급
 - (예시) 3월 7일 중도 입사 시: 3월 7일 ~ 4월 6일까지 만근 급여 지급
- ▶ [약정임금] 청년인턴에게 제수당 미포함 기본급 최저임금(2,096,270원)이상 지급
- ▶ [4대보험]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필수 대상입니다.
- 단, 의료급여수급자·유공자·외국인 등 특수면제대상은 사유서 제출바랍니다.

Q.03

인턴은 수습근로자인데,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 ▶ 네.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본 「청년디자이너 인턴십」사업의 경우 최대 6개월 채용으로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Q.04

실수령액 증가를 위해 **비과세**(자가운전보조금, 식대)를 기본급에서 감액지급해도 되나요?

- ▶ 아니요. **기타 수당(급여 비과세)항목을 불포함한 금액으로 최저임금(2,096,270원) 이상 기본급 지급처리 되어야 하며, 급여명세서 기본급 및 이체내역 등을 확인 후 지원금 지급합니다.**

2. 지원금 신청 금액

Q.01-1

I. 임금계산기간이 '1~말 일'인 경우, 지원금 일할 계산 방법이 어려워요.

- ▶ 지원금 일할 계산 시 다음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 (A)지원금 139만원 / (B)지원금 125만원 *(A)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 수혜 여부를 확인 바람
 - **지원금 계산식** **(월 지원금÷해당 월 말일)×**(해당 월 말일-(입사일-1))
 - 월 139만원 협약기업에서 3월 17일 입사한 경우, $(1,390,000원 \div 31일) \times (31일 - 16일)$
= 672,580원 *원단위 절사

Q.01-2

II. 임금계산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지원금 일할 계산 방법이 어려워요.

- ▶ 임금계산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지원금 일할 계산 시 다음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 (A)지원금 139만원 / (B)지원금 125만원 *(A)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 수혜 여부를 확인 바람
 - **지원금 계산식** **(월 지원금÷해당 월 말일)×**(입사일 ~ 임금 계산일)
 - 월 139만원 협약기업에서 3월 17일 입사했으며 임금계산기간이 '20일~19일'인 경우,
입사일부터 임금 계산일까지 총 4일 근무로, 4일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390,000원 \div 31일) \times (17일 \sim 20일(총 4일))$
= 179,350원 *원단위 절사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Q.0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www.nps.or.kr)>사업장 로그인>‘사업장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메뉴 클릭

● 보험료 지원내역



• 사업장 고객 정보

사업장명 사용자 성명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주소

•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기간 1 ~ 12 조회

단, 139만원 협약 기업·기관에서 인턴이 아닌 다른 근로자의 지원 여부는 무관합니다.

Q.0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취소하고 싶어요.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취소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여부 확인 통지 → 수령

신청인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신청인

- ▶ 취소방법

- (양식 다운로드)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연금정보 > 자료실 > 서식자료 > ‘보험료 지원제외·재지원 신고서’

- (제출처) 소재지 관할 공단에 방문 또는 FAX 제출

- (문의처) 국번없이 1355

- ▶ 제외 사유는 국가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로 ‘그 외’를 선택합니다.

Q.03

인턴십이 끝난 뒤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 ▶ 가능합니다. Q.2에서 사용한 양식으로 ↗재지원 신청서를 관할 공단으로 제출하면 심사 후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혜 조건 및 지원은 국민연금공단·고용보험공단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관련

Q.0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수 교육인가요?

- ▶ 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Q.0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 ▶ 고용노동부 제공강의([바로가기](#))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자체교육용)_feat.강의ver.('24년)
▶ 고용노동부 제공강의([바로가기](#)) (성희롱 예방교육) 뭉쳤다! 국내 최고의 소통전문가와 공인노무사 with 레이디제인
▶ 그 외 다양한 법정교육은 공공디자인 온라인 직무교육홈페이지에서 무료수강 가능합니다.

5. 인턴 중도퇴사 관련

Q.01

인턴이 중도 퇴사예정입니다. 이후 절차가 있을까요?

- ▶ 인턴 중도퇴사가 예정된 경우 즉시 사무국으로 아래 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인턴명	000	2. 퇴사일	0000년 00월 00일
3. 퇴사사유	0000	4. 근무기간	00월 00일 ~ 00월 00일
5. 지원금 신청 계획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input type="checkbox"/>		

- ▶ 지원금 지급은 최소 14일 이상 근무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해당 인턴에 대한 잔여 지원금을 이월하거나, 인턴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사업장로그인 > 전자통지 > 가입/납부 통지서 조회 > 22번 통지서]를 교부신청 시 인턴의 상실일이 조회되는 서류를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